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정 2011. 6. 7. 규정 제88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4.3.4.] [규정 제176호, 2014.3.4., 전부개정]
[시행 2015.8.24.] [규정 제228호, 2015.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채무자”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받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상환 및 연체관리

제3조(연체관리)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상환 업무 담당 부서(이하 “상환부서”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연체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연배상금) ①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채권 만기일(만기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채권 만기일 다음날부터 대출잔액에 약정 당시의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해당인에게 부과한다.

②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8.21]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는 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사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채권 이관) 상환부서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을 대출약정서 등 채권원인서류와 함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회수 업무 담당 부서(이하 “회수부서”라 한다)에 이관한다. <개정 2015.8.21>

1.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대출 만기가 지난 채권
2. 소멸시효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채권
3. 그 밖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제3장 채권의 회수

제6조(채권회수의 원칙) ① 재단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무자를 면담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다만, 채무자 면담, 상환 촉구의 방식을 통하여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가능성,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환금액, 상환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조(채무상환 촉구) 회수부서는 제5조에 따라 채권을 수관한 경우 채무상환을 촉구하는 문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8조(채권충당순서) ① 회수한 대출금은 대지급금(재단이 법적 절차에 있어 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지연배상금,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 및 회수부서 채무조정으로 회수한 대출금은 대지급금, 원금, 지연배상금 순으로 충당한다. <신설 2015.8.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대출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채권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지 못할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받지 못할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함
2.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채권의 경우에는 최종 회차에 변제받을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함

제9조(시효관리) ①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한 때

2. 소멸시효가 20년 이상 연장된 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려면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그 밖에 소멸시효 중단 등 소멸시효의 관리에 관하여는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법적절차 등)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소송 등에 관하여는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4장 채권의 상각

제11조(상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1. 법적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 ② 재단은 상각 실시 결과를 상각을 실시한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의 상각 및 특수채권(상각한 채권 및 그에 부대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5장 채무자에 대한 회생 지원

제12조(채무의 면제) ① 재단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채무의 조정) 재단은 채무자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의 예에 따라 분할상환(채무감면 없는 분할상환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에 사항) 그 밖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자금대

출채권 관리규정」의 예를 따른다.

부칙 <규정 제176호, 2014.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상환의 허용에 대한 특례) 재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분할상환의 허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228호, 2015.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 및 채권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신규 대출건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5.8.24>

연체관리 활동(제3조 관련)

연체 기간	활동 내용	안내 수단			활동 시기
		우편	SMS	전화	
1개월부터 3개월 이전까지	연체 및 상환 안내	X	O	X	월 1회
3개월부터 5개월 이전까지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예정 안내	O	O	X	월 1회
5개월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예정 안내	O	O	O	월 1회
6개월부터 이후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 및 등록결과 안내	O	O	X	월 1회